

2021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주)농심홀딩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I

개 요

▶ 기업명 : 주식회사 농심홀딩스

▶ 작성 담당자 : (정) 인진수 대리 (기획부서) 02-820-7818 / injinsu@nongshim.com
 (부) 김동영 사원 (회계부서) 02-820-7819 / scott110@nongshim.com

▶ 작성기준일 : 직전 사업년도 말일(2021.12.31.)

▶ 기업개요

최대주주등	신동원 외 17 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66.60%
		소액주주 지분율	22.04%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 제품	지주회사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기업집단명	농심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21 년	2020 년	2019 년
연결 매출액	6,415	5,836	5,367
연결 영업이익	558	740	413
연결 계속사업이익	492	685	366
연결 당기순이익	492	685	366
연결 자산총액	13,286	12,481	12,165
별도 자산총액	5,647	5,617	5,865

1. 기업지배구조 정책

(1) 지배구조 정책 및 특징

(주)농심홀딩스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가치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위주로 하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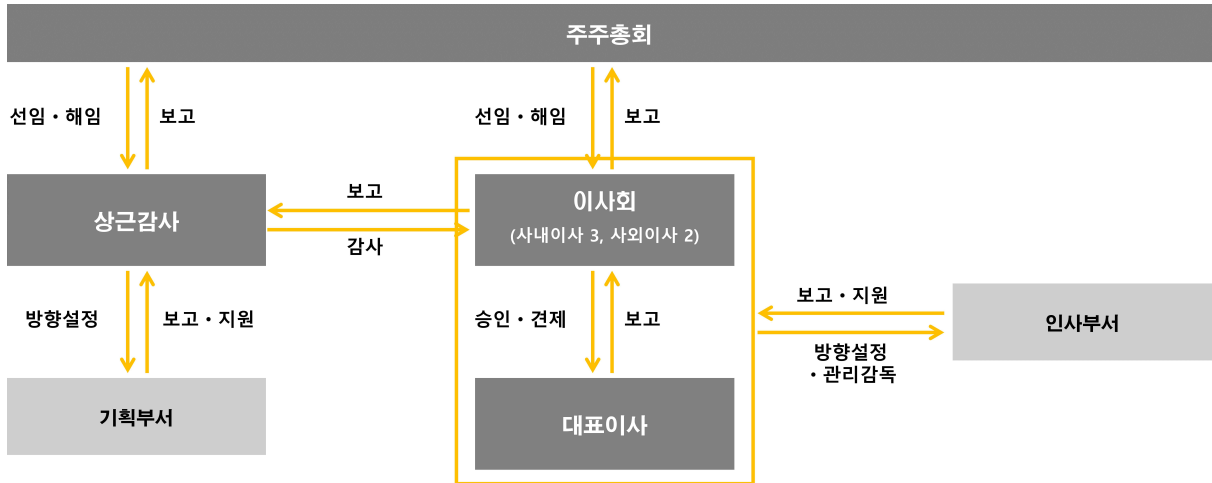
회사의 중요한 경영 사항은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이외에도 경영현황 등 주요 이슈 또는 재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별도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이사들에게 의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실시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실질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2022년 5월말 현재 총 5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에서 상장회사에 요구하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비율인 25%를 상회하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외이사는 산업계, 금융계, 의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된 분들 중에서, 법적인 결격사유 뿐만 아니라 대주주 및 기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또는 이해관계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 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 후보추천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근감사 지원조직을 확충하고, 이사회 회의 참석 전 이사회 의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상근감사의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 구성현황, 활동내역 등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조직도 및 지배구조 현황은 다음 장의 표와 같습니다.

(2) 기업지배구조 조직도



(3) 법인의 주요기관 요약 현황

내부기관	인원구성	성명	주요 역할
이사회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신동원 대표이사 신동윤 사내이사(이사회 의장) 신현주 사내이사 정희원 사외이사 이석현 사외이사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4.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5. 경영현황 등 이사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감사	상근감사 1명	홍영규 상근감사	1. 이사회 견제 및 감사 2. 법인 내부 감사실시 3.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및 조정활동 4. 감사결과의 보고

※ 법인의 주요 기관인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은 5p ~ 10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3. 이사회" 및 "4. 감사기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 주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사는 총 3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동 기간에 임시주주총회는 없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따라 주주총회 일시, 개최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2020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주총회 개최일의 2주 전까지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공고하고, 모든 주주에게 서면으로 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주총회 결과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일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내역]

구 분	2022년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1년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0년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2년 2월 24일	2021년 2월 26일	2020년 2월 24일
소집공고일	2022년 3월 15일	2021년 3월 12일	2020년 3월 12일
주주총회개최일	2022년 3월 30일(수)	2021년 3월 29일(월)	2020년 3월 27일(금)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총 15일 전	주총 17일 전	주총 15일 전
개최장소/지역	본점 지하1층 강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점 지하1층 강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점 지하1층 강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 분		2022년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1년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0년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	-	-
세 부 사 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5명 중 2명 출석	5명 중 2명 출석	7명 중 3명 출석
	감사 출석여부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 5인 (개인주주 5인) 2) 보고 및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동의	1) 발언주주 : 6인 (개인주주 6인) 2) 보고 및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동의	1) 발언주주 : 5인 (개인주주 5인) 2) 보고 및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동의

나. 주주총회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의 주주총회 4주전 통지 여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세부원칙 1-①에서는 기업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충분한 정보를 주주총회 4주전까지 주주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 2주 전까지만 기업이 주주총회와 관련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주가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살펴볼 시간을 법적 보장 요건보다 더욱 긴 기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는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주회사로서 당사의 결산뿐만 아니라 자회사, 손자회사와의 연결 결산일정도 고려해야 하는 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일정 및 감사보고서 수령예정일, 경영진의 주요 경영일정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도, 2022년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일정에서는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상법을 준수하여 최근 3년 동안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DART)을 통해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하고 모든 주주에게 서면으로 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주주총회 개최일시, 장소, 의안 뿐만 아니라 사업의 개요, 사외이사 활동내역, 선임 예정 후보자 관련 사항 등 주주총회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실적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주회사의 특성상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는 실무상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향후에는 자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과의 업무협약의 및 사전 일정조율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총회 4주 전에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i)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2021년 제18기 정기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실시하였으나, 2020년 제17기 정기주주총회와 2022년 제19기 정기주주총회는 자회사, 손자회사와의 연결 결산일정,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일정 및 감사보고서 수령예정일, 경영진의 주요 경영일정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내역 등]

구 분	2022년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1년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0년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2.03.25, 30, 31	2021.03.26, 30, 31	2020.03.13, 20, 26, 27
정기주주총회일	2022.03.30	2021.03.29	2020.03.27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아니요	예	아니요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전자투표 실시여부	예	아니요	아니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ii) 서면투표 · 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농심홀딩스는 당사의 주주가 COVID-19 등 주주총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주의 권리인 의결권을 최대한 행사하여 투자자들의 권리보호 및 주주참여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2021년 11월 15일에 있었던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개최되는 주주총회부터 계속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22년 3월 30일 제1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전자투표 기간은 2022년 3월 20일부터 주주총회 전날인 3월 29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서면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총회 운영방안을 지속 검토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iii)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 등

최근 3년간 당사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및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2.03.30]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 주식수(B)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제19기('21.1.1~'21.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가결	4,637,764	3,388,239	3,247,696	
						(95.85%)	140,543
						(4.15%)	
제2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	가결	4,637,764	3,388,239	3,247,853	
						(95.86%)	140,386
						(4.14%)	
제3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가결	4,637,764	3,388,239	3,087,379	
						(91.12%)	300,860
						(8.88%)	
제4호 의안	보통	감사 보수한도 승인	가결	4,637,764	3,388,239	3,165,566	
						(93.43%)	222,673
						(6.57%)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9]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 주식수(B)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제18기('20.1.1~'20.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가결	4,637,764	3,442,329	3,418,783	
						(99.32%)	23,546
						(0.68%)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변경	가결	4,637,764	3,442,329	3,439,864	
						(99.93%)	2,465
						(0.07%)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 주식수(B)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비율, %)
제3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	가결	4,637,764	3,442,329	3,439,484 (99.92%)	2,845 (0.08%)
제4호 의안	보통	감사 선임	가결	1,392,189*	564,469*	564,366 (99.98%)	103 (0.02%)
제5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가결	4,637,764	3,442,329	3,217,461 (93.47%)	224,868 (6.53%)
제6호 의안	보통	감사 보수한도 승인	가결	4,637,764	3,442,329	3,433,057 (99.73%)	9,272 (0.27%)

* 감사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하고 기재하였습니다.

[제17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7]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 주식수(B)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제17기('19.1.1~'19.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가결	4,637,764	3,700,004	3,674,553 (99.31%)	25,451 (0.69%)
제2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	가결	4,637,764	3,700,004	3,677,256 (99.39%)	22,748 (0.61%)
제3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가결	4,637,764	3,700,004	3,231,963 (87.35%)	468,041 (12.65%)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 주식수(B)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제4호 의안	보통	감사 보수한도 승인	가결	4,637,764	3,700,004	3,693,686
						(99.83%)
						6,318
						(0.17%)

※ 상근감사 선임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12 제7항에 의거하여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3%를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는 의결권행사 주식 수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나.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당사의 최근 3개년 평균 주주총회 참석율은 75.7%(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입니다. 당사는 서면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2021년 11월 15일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의결하였고 제19기 정기주주총회(2022.03.30)에서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결권을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이후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전자투표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아직 전자투표제도가 주주들에게 생소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소집통지서 및 유선상의 전화 응대를 통해 전자투표제도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제안 관련 사항

(i) 주주제안 절차의 홈페이지 안내 여부

주주제안권 제도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써, 상법

제363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6개월을 소유(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상장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 보유 및 6개월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법에 정해진 허용범위 내에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안요건 및 방법은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2021년까지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고, 주주제안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주주의 문의가 올 경우 유선상으로 그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당사의 주주가 주주제안 절차를 더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법상 주주제안 절차를 당사 홈페이지의 “기업지배구조” 게시판에 게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ii)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의 유무

주주제안권 처리는 당사 기획부서의 IR담당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해당 주주제안권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법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주주제안권은 평균적으로 주주총회 4주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 논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내부 보고 절차를 거쳐 곧바로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상법상 규정 검토와 함께 주주가 제안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논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는 해당주주에게 유선과 함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됩니다.

(iii)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상황(안건 관련 주주총회 찬반비율 명기)

보고대상기간인 2020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인인 현재까지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 주주로부터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안건이 상정된 바도 없으며, 이외 당사 이사회가 상정한 주주총회 안건 및 각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의 찬반비율은 상기 세부원칙 1-②에 기재한 제17기부터 제19기 주주총회에 관련된 내용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iv)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현황

보고대상기간인 2020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인인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으며, 이에 관련 별도의 이행상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나. 주주제안권 행사의 용이성

상기와 같이 당사는 보고대상기간인 2020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인인 현재까지 주주로부터 주주제안권이 행사가 된 사례가 없으며, 홈페이지에 직접적으로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를 게시함과 동시에, 주주의 문의가 있을 경우 유선상으로도 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법상 요건에 맞는 적법한 주주제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곧바로 이사회에 보고되며, 주주총회 소집을 논의하는 이사회에 논의안건으로 상정되어 토의 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고, 그 결과는 주주에게 통보됩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주주환원정책과 관련된 사항

(i)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는 원칙 아래 설립 이후로 한번도 빠짐없이 연속배당(보고서 제출일 현재 19회 연속배당)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지급하고, 해당 내용은 주주총회 6주전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와 주주총회 승인 당일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이용하여 안내해 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지주회사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당사의 배당은 『배당금 수익을 한도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비경상 손익 제외)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설립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배당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계획]

구분	내용
① 배당기간	당사는 최근 5년간 배당규모를 유지해왔으며, 향후 최소 3년간 배당규모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② 배당계획의 점검	유의적인 사업환경 및 경영실적 변화시, 또는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배당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③ 소통방법	향후 배당정책 조정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DART 및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내용
④ 배당형태	현금배당
⑤ 배당시기	연차배당

(ii) 주주환원정책 등을 주주에게 안내하는 방식

당사는 기존의 주주환원정책 안내방식(전자공시시스템 (DART)의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 및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 등을 이용한 안내)에 더하여 2022년부터는, 2022년 3월 22일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시된 제19기 사업보고서의 “III. 재무에 관한사항 - 6. 배당에 관한 사항”에 상기 배당정책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의 ‘기업지배구조’ 게시판에도 해당 배당정책을 게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역을 당사의 IR자료에도 수록하고, IR 미팅 및 주주와의 전화응대를 통하여 당사의 배당정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2022년 『배당금 수익을 한도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비경상 손익 제외)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정책을 수립한 이후,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의 홈페이지, IR미팅 및 주주 유선 문의 등을 통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 이슈 및 경영환경, 현금흐름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가 동반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내용을 주주에게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주주환원 전반에 대한 사항

(i)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환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

사업연도	결산월	주식종류	주식배당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원)	총 배당금(원)	시가 배당률(%)	배당성향(%)	
							연결 기준	개별 기준
2021년	12	보통주	-	2,000	9,275,528,000	2.6	18.9	70.8
2020년	12	보통주	-	2,000	9,275,528,000	2.7	13.5	63.2
2019년	12	보통주	-	2,000	9,275,528,000	2.6	25.3	91.4

(ii)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실시여부 및 내역

당사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나. 배당 등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 여부

㈜농심홀딩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배당규모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2003년 설립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19회의 연속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8년간 1주당 2,000원(액면배당률 40%)을 지속적으로 배당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후 1개월 내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사의 장기적 성장, 투자계획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의 배당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현황

(i) 발행가능 주식 현황, 기 발행주식 현황, 발행된 종류주식 현황

당사의 정관에 의거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5,000,000주(1주의 금액 : 5,000원)이며, 제19기 사업년도(2021년)말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637,790주입니다.

[2021.12.31 주식발행 현황]

구분	발행가능주식수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비고
보통주	15,000,000	4,637,790	30.92%	-

(ii)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등

당사의 발행주식 전체는 기명식 보통주식이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합니다. 보통주식 이외에 발행된 종류주식은 없으며, 종류주주총회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나.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는지 여부

상법 및 당사의 정관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식을 소유한 모든 주주는 보통주식 1개당 1개의 의결권을 공평하게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 주주와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사항

(i)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등 개최 내역

당사는 기획부서에서 IR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그리고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위하여 유선상 경영실적문의 등의 응대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회사 탐방 또는 1대1 미팅을 원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소액주주에게는 그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상시적으로 1대1 대면 미팅을 개최해 왔습니다. 다만, 2021년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는 COVID-19가 유행하고, 그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1대1 대면 미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모두 유선상의 미팅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2021.1.1 ~ 2022.5.31 IR개최현황]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2021.03.30	국내 기관투자자	전화미팅	사업현황 및 향후 전망
2021.04.27	국내 기관투자자	전화미팅	사업현황 및 향후 전망
2021.06.07	해외 기관투자자	전화미팅	사업현황 및 향후 전망
2021.08.19	국내 기관투자자	전화미팅	사업현황 및 향후 전망
2021.09.14	애널리스트	전화미팅	사업현황 및 향후 전망
2021.10.12	국내 기관투자자	전화미팅	사업현황 및 향후 전망
2021.12.06	국내 기관투자자	전화미팅	사업현황 및 향후 전망
2022.01.19	애널리스트	전화미팅	사업현황 및 향후 전망
2022.04.06	해외 기관투자자	전화미팅	사업현황 및 향후 전망

※ COVID-19에 대한 회사정책으로 인하여, 기업탐방을 원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소액주주 등에게 기업탐방 대신 전화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미 공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연도 혹은 분기의 경영실적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받는 식으로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소액주주와의 수시 전화문의 응대 등 일상적인 소통활동은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ii)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여부

당사는 투자자 또는 주주들의 IR문의를 위해 당사 홈페이지에 회사의 대표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전화번호를 통해 IR문제가 IR담당자에게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현재 당사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지 않으나 추후에는 관련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ii)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사이트 운영, 담당자 연락처 공개 여부 및 영문공시내역

당사의 주주명부에 근거하면, 2021년말 (주)농심홀딩스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주주 수 기준으로 전체 주주 수의 0.70%이며, 의결권 있는 주식 수 기준으로는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2.06%입니다. 당사는 현재 외국인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영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영문공시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당사의 외국인 주주 비중 추이를 계속 파악하는 한편으로 경영전략 및 사업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영문사이트 개설과

영문공시 제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iv) 공정공시 내역

당사는 지주회사업외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순수 지주회사로서, 주요한 사업실적은 모두 자회사와의 연결 실적에서 발생하는바, 자회사의 실적이 확정되기 전의 미공개 잠정 실적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정공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추후 변동될 수 있는 정보로 인하여 자본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함이며 당사의 연결 실적은 자회사의 실적이 모두 확정된 후 정기공시를 통하여 공시되고 있습니다.

(v)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동안, 공시의무 발생시 공시기한을 준수하여 적절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한 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성실히 공시의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라.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IR 활동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공시의무 발생시 적절한 정보를 공시의무 기한 내에 주주에게 전달하는 공시활동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낮은 외국인 주주 비율과 자회사에서 주된 사업실적이 발생하는 사업구조 상 영문사이트 및 영문공시, 미공개 잠정 실적을 대상으로 한 공정공시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추후에는 당사의 비용대비 이익이 극대화되는 영문사이트 및 영문공시 개시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미공개 잠정실적의 확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나머지 미흡한 부분도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 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가.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

(i)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정책)

당사는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를 해당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9조

제3항에서는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당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회사와 거래하고자 할 때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상법 제398조를 준용하여, 당사와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매년마다 미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는 농심 기업집단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해당 거래 발생시 적법하게 이사회 사전 승인을 거쳐 공시할 예정이며,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등과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의 내용과 사유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하여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통제장치를 갖고 있으며, 특히 상법 제398조를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규정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398조는 거래상대방은 특정하지만, 거래규모에 대하여는 특정하지 않는바, 계열회사와의 소액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매년 말마다 다음연도에 발생할 계열회사와의 반복되는 일상적인 거래액을 추정하여 사전승인을 받되, 사전에 추정하지 못했던 반복되는 일상적인 거래 외의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추가로 발생할 시에는 그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사회 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등과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2021년 12월 22일에 있었으며, 이사회 의결 내용은 태경농산(주), (주)농심, (주)농심기획, (주)엔디에스 등 당사와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상적인 거래*가 있는 8개 회사로부터의 2022년 예상 매입액을 합산한 1억 내외를 이사회로부터 사전승인 받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직원 복리후생 성격의 제상품 구매, 직원 교육비, 달력 제작비, 회사식당 경비, 홈페이지 관리비 및 통신비 등의 거래를 말합니다.

* 당사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로서 별도 매출은 모두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매년마다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거래는 주로

매입거래입니다.

(iii)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정기보고서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①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기간: 2021.1.1~2021.12.31)

- 당기 중 발생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거래는 없습니다.

②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기간: 2021.1.1~2021.12.31)

- 당기 중 발생한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거래는 없습니다.

③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기간: 2021.1.1~2021.12.31)

- 당기 중 발생한 대주주와의 영업거래는 없습니다.

④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기간: 2021.1.1~2021.12.31)

- 당기 중 발생한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없습니다.

(세부원칙 2-③)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의 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

상법에서는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회사의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상법 제374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5, 상법 제360조의22),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대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74조의2),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에 대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3, 상법 제530조의11)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3년 7월 창립한 이후로 최근 10년 동안 안정적인 사업구조와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계획 및 실제 실행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사 자체의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 보호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기 사례 발생시 상법 외 회사 자체적으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종류와 그 효과 및 타사 사례를 수집 및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당사에서 세부원칙 2-③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 보호를 위해 시행된 내용 및 향후 계획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을 행한 바가 없으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그에 대한 관련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관련 내용이 수립되면 공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이사회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관련 제도

(i)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의 심의·의결사항

현재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법령과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의 소집과 부의 의안에 관한 사항,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등 회사 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사의 별도 지원조직은 없으나 인사부서에서 이사회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 (7) 주식의 소각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이사, 감사의 선임, 해임 및 보수

-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2)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3) 주식배당 결정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16)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 (17)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의 결정
-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전략적 사업방향
- (3) 자회사의 설립, 편입 및 탈퇴
- (4) 중요한 신규사업 및 투자
- (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6)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해임, 직책 및 보수 등
- (7) 상담역 또는 고문의 선임, 해임 및 보수
- (8) 공동대표의 결정
- (9)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10) 지점, 공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11)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 (1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3) 대규모 자금의 차입 및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 (4) 신주의 발행
- (5) 사채의 모집
- (6) 준비금 및 적립금의 자본전입
- (7) 전환사채의 발행
-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4. 기타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4) 상장법인공시에 관한 규정 중 중요 사항
-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ii)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

당사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관련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심의·의결사항의 자율적 추가 또는 기준금액 강화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사회 규정에 의거,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부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iii)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 제14조(사채의 발행)에 의거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발행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 관련 사항,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8회 내외의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에 앞서 해당 안건의 세부내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사전 설명을 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지원조직에 요청한 후 검토 및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등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타 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후보 선정 및 관리 교육에 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영효율성 및 주주가치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된 규정 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 상정할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선별 및 추천함에 있어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그 적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여 회사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내부통제정책

[리스크관리]

당사는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수익사업 없이 지주회사업을 주요 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당사의 특성상, 당사는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공시리스크"를 당사가 경영상 직면할 수 있는 주요한 리스크로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리스크를 보유하거나 발생시키는 업무부서의 담당자가 1차적으로 개별리스크를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는 재무적인 리스크로, "운영리스크"와 "공시리스크"는 비재무적인 리스크로 나누었으며, 다시금 사내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야에 맞게 개별 리스크를 기획부서, 법무부서, 인사부서, 회계부서 등에 할당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 리스크는 업무절차에 따라 리스크 관리 부서장에게 보고되며, 해당 개별 리스크가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보고사항이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명문화 된 "리스크관리규정"을 통하여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 방법을 정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법률리스크", "평판리스크" 등을 포함합니다.

[준법통제기준]

당사는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매년 회사의 준법통제기준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당사의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고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매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이사회와 감사, 그리고 주주총회에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여 그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감사는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내부회계 관리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관리]

당사는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공시 관련 조직으로는 공시책임인원 1인, 공시담당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시 담당자는 정기공시 사항은 물론, 수시공시 사항이나 지분공시 사항 발생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의 공시 담당자를 중심으로 주요 종속회사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적시에 정보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시 서식 개정이나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해당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공시정보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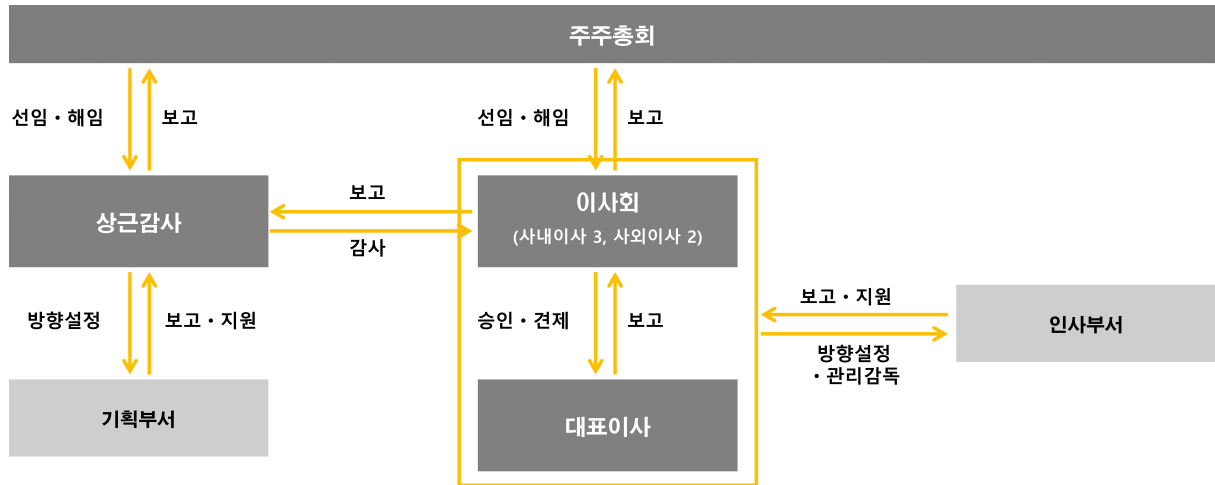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

(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인원 구성 포함) 등 관련 조직도



(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농심홀딩스의 이사회는 당사 정관 제30조에 의거하여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총수의 1/4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은 상법 제383조 및 상법 제542조의8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5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5.31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구분	성명	성별 (만 나이)	직책	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내이사	신동원	남 (64세)	대표이사 회장	2003.7.1	2024.3.29	그룹경영	현 (주)농심 회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구분	성명	성별 (만 나이)	직책	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내이사	신동윤	남 (64세)	이사회회장 부회장	2009.3.27	2024.3.29	화학업종· 경영	현 울촌화학(주) 대표이사 회장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사내이사	신현주	여 (66세)	부회장	2020.3.27	2023.3.27	광고업종· 경영	현 (주)농심기획 부회장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41기 수료
사외이사	정희원	남 (70세)	사외이사	2018.3.23	2024.3.29	조직·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사외이사	이석현	남 (48세)	사외이사	2022.3.30	2025.3.30	법률 (변호사)	현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수료

※ 선임일은 최초선임일 기준입니다.

(i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는 경영현황 등 내부 상황에 맞춰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v) 사외이사수, 비율, 연임 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총 2인으로, 전체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명의 사외이사 중 정희원 사외이사만 1회 연임되었으며, 이석현 사외이사는 2022년 3월 30일 제1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v)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여부, 미분리 시 선임(先任)사외이사의 별도선임 여부

당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에 대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지주회사업외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로 당사의 공정 거래법상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식품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광고 대행업 등 다양한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등의 다양한 사업영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의 이사회는 자회사 등의 사업영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이사들과 법률 및 의학 등 다양한 방면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서 상장회사에 요구하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비율인 25%를 상회하는 전체 이사 총수의 40%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갖추었으며, 특정성별 및 나이대,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경영 현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현황

(i) 이사회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정책의 마련 여부 및 이사회 구성원별 구체적 현황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다양한 사업영역을 가진 자회사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업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이사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특정 배경 및 특정 직업군에 치우치지 않고,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산업계, 금융계, 의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이사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회의 후보선출 과정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선출된 현재 당사의 이사 및 사외이사들에 대해 이사회가 후보 추천한 이유(이사회가 파악한 전문성과 책임성, 다양성 등)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성명	이사회가 파악한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 등 (선임배경)
사내 이사	신동원	신동원 사내이사 후보자는 주요 자회사인 (주)농심에 1979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전략경영실 총괄,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농심그룹의 성장과 함께 해왔습니다. 또한, 동 후보자는 식품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농심 그룹의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였기에,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그룹이해도 및 경영능력이 필수적이라 판단하여 후보 추천하였습니다.
	신동윤	신동윤 사내이사 후보자는 1983년 주요 자회사인 울촌화학(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회사의 신성장 동력인 전자소재 사업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등 농심그룹의 성장과 함께 해왔습니다. 또한, 동 후보자는 포장 및 소재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농심 그룹의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였기에,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그룹이해도 및 경영능력이 필수적이라 판단하여 후보 추천하였습니다.
	신현주	신현주 사내이사 후보자는 주요 손자회사인 (주)농심기획의 경영진으로 오랫동안 광고·기획업에 몸담아 왔으며, 지주회사의 경영활동에 적합한 그룹이해도 및 경영능력을 갖추어 왔습니다. 이에 당사의 이사회는 후보자를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적임자라 판단하여 후보 추천하였습니다.

구분	성명	이사회가 파악한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 등 (선임배경)
사외 이사	정희원	정희원 사외이사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암병원의 성공적 개원, 심장뇌혈관병원 착공 등 병원의 외적인 성장을 이끔과 동시에, 여러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병원의 질적인 성장도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이사회는 후보자의 검증된 경영능력이 당사 이사회의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후보 추천하였습니다.
	이석현	이석현 사외이사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Columbia Law School에서 LL.M. 과정까지 끝마쳤습니다. 민법학에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이자, 미국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기업법무(M&A, 합작투자, 도산 및 구조조정 등), 공정거래업무, 국제거래 및 국제분쟁 해결 업무 등의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을 쌓았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이석현 사외이사 후보자가 당사의 준법경영 강화 및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이에 후보 추천하였습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에 있어 어떠한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 된 규정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향후 경영환경 등의 변화에 의하여 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 자체적인 명문화 된 규정이 필요할 경우 경영진의 면밀한 검토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 외 이사회 구성원의 직책, 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전문분야, 주요 경력 등 구체적 현황은 상기 세부원칙 4-④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내역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0.1.1 ~ 2022.5.3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사내 이사	신춘호	2003.7.1	2021.3.29	2021.3.27	사임	퇴직
	신동원	2003.7.1	2024년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2021.3.29	재선임	재직
	신동윤	2009.3.27	2024년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2021.3.29	재선임	재직
	신동익	2009.3.27	2021.3.29	2020.3.30	사임	퇴직
	신현주	2020.3.27	2023년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2020.3.27	신규선임	재직
사외 이사	김문희	2010.3.26	2022.3.30	2022.3.30	임기만료	퇴직
	정희원	2018.3.23	2024년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2021.3.29	재선임	재직
	이석현	2022.3.30	2025년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2022.3.30	신규선임	재직

※ 변동사유란에는 사임, 해임, 임기만료, 신규선임, 재선임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나. 이사회 의 경쟁력 여부(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당사의 이사회는 식품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광고 대행업 등 자회사의 폭넓은 사업영역에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이사들과 의학계와 법조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유능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각종 경영 현안들을 유연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내·사외이사 선임 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동 위원회의 구성현황(사외이사 비율 포함) 및 활동 내역

당사의 이사회 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선임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은 물론, 상법에서 요구 중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법규위반으로 인한 행정적, 사법적 제재 기록 유무, 기업가치의 훼손이력 및 주주권의 침해이력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i)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이사선임 후보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 제공 여부

당사는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및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의 표와 같습니다.

[2021.1.1 ~ 2022.5.31 주주총회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22.3.15 (주총 15일전)	2022.3.30	사외	이석현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확인서	-
2021.3.12 (주총 17일전)	2021.3.29	사내	신동원		-
		사내	신동윤		-
		사외	정희원		-

(ii)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의 정보제공

당사 이사들의 이사회 출석을 및 의안 내용별 찬반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회 활동 내역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유무 및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 의견 반영여부

㈜농심홀딩스는 당사 정관 제31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소수주주 의견 반영과 관련하여,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6에서 규정한 '주주제안권 제도'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6개월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이사 선임과 관련한 의견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출할 경우 해당 내용을 빠르게 검토하고, 이사회 토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처리절차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라.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여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 선임 후보자를 다양한 요건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주주총회 최소 2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과 우편 발송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선임 되는 이사 후보를 위하여 기존 이사들의 이사회 활동 내역은 모두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소수주주의 의견 제안을 대비한 주주제안권 담당부서와 처리절차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중투표제와 관련된 도입

계획은 없으나 도입 효과 및 타사 사례, 운영방식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경영환경 또는 법률환경 등의 변화로 인한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당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가.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당사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5.31 임원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신동원	남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회장
신동윤	남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이사회 의장, 경영총괄
신현주	여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정희원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이석현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홍영규	남	상근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
장승엽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실장

나.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 방지 정책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가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임원은 이사회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외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 받은 경우 등도 함께 고려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인사 고과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당사의 '준법통제기준', '윤리행동규칙', '복무규정' 등의 사규와 기타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유무를 사전에 검토하여 임원 선임과정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이후에도 '준법통제기준', '윤리행동규칙', '징계규정' 등의 사규에 근거한 징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

당사의 임원 가운데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는 없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도입여부

당사는 상법 제408조의2의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임원제도와 관련된 도입 계획은 없으며,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당사와의 이해관계 전반

(i)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 포함)에 재직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현재 재직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나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 등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5.31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기업·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했 는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정희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석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 당사의 계열회사가 법률자문으로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거래한 내역이 있습니다. ('19년 약 5.6억원, '20년 약 7.5억원, '21년 약 4.8억원)

(ii)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와의 거래 유무

최근 3년간 현재 재직중인 당사의 사외이사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iii)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와의 거래 유무

사외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를 제한함에 있어, 상법에서는 제382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으로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의 사외이사 임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상기

상법상 조항뿐만 아니라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등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적 조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별개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세부원칙 5-①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의 계열회사와의 거래도 추가로 서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재직중인 이석현 사외이사는 현재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당사의 계열회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거래액은 2019년 약 5.6억원, 2020년 약 7.5억원, 2021년 약 4.8억원입니다.

(iv) 상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내부규정 등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는 후보자의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유무를 확인하여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임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이사 후보자 확인서'를 사외이사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서명 받아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도 함께 고려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 후보자로 주주총회에 추천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각각의 재직기간과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 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있는지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각각의 재직기간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6년을 초과하여 당사에 장기 재직하거나,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2022.5.31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 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 시 그 사유
정희원	4년 3개월	-	4년 3개월	-
이석현	3개월	-	3개월	-

다. 사외이사와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 및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 등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현재 선임된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자의 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유무를 확인하여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임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이사 후보자 확인서'를 사외이사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서명 받아 그 내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전반

(i)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부 기준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의 허용 기준을 준용합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추가로 1개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 이사의 의무인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

[2022.5.31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¹⁾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정희원	2018.03.23	2024.03.2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	-	-
이석현	2022.03.30	2025.03.30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	-	-	-

1) 겸직기관은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포함

나.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검직을 지양하고 있으며, 정기 이사회 및 이사회 관련 설명회에 충실히 참석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개최 전 사전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사회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기타 사내 주요 현안 관련 사항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별도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 운영 현황

(i)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및 인적·물적자원 제공 절차, 구체적 제공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외이사에게 경영, 리더십, 인문학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교육 콘텐츠도 제공하는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5일에는 당사 인사 및 기획부서 주도로 주요 계열사의 2021년 예상실적을 보고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된 전자투표 시행의 건과 관련하여 전자투표의 개요 및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개최에 앞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 및 검토한 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ii)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지정 여부 등

당사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인사부서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동 부서는 사외이사 지원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 설명,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안건 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는 사외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해당 부서 및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이메일, 유선 등으로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ii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 개최 여부와 그 내역

당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없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기에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별도 회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사부서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 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부서 및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이메일, 유선 등으로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는 개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사외이사의 별도 회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는지, 평가결과는 재선임 여부에 반영되는지 여부

(i) 사외이사 평가 실시 여부 및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 평가방법,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개별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한다면 사외이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합니다. 다만, 후보자 최초 선임 및 재선임 시 상법에 의거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결격사유는 물론 직무전문성, 윤리성,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외이사 지원조직에서 개별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별 실적에 근거한 사외이사 평가 및 평가 결과에 기반한 재선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검토 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함께 고려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

(i)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는 보수 관련 정책의 내용과 해당정책의 수립배경, 구체적 보수 산정기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수량, 행사조건(성과 연동 여부 포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 회사의 규모 및 업종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보수와 평가를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모든 사외이사에게 별도 수당이나 회의비 명목의 경비 지급 없이 고정급의 형태로만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외이사 보수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인원수(명)	보수총액 (백만원)	1인당 평균보수액 (백만원)
사외이사	2	84	42

나.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는지 여부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 회사의 규모 및 업종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특정 사안에 대해 검토 및 제안할 수 있는 범위와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로 평가하여 이를 보수에 반영할 시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사외이사의 회의 출석률, 기여도 등 여러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

(i) 정기이사회 관련 규정 현황(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구분합니다. 당사는 매년 분기별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 주주총회 소집 등을 위해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개최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들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합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i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및 사전에 회의일정을 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을 통지하는지 여부 등

당사는 상기와 같은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총 12회(2021년 8회, 2022년 보고서 제출일까지 4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의 1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사전 통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이사회 개최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 ~ 2022.5.31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자	안건 통지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차	결의 사항	제1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1.02.08	2021.02.05	5/6
	보고 사항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보고 사항	2020년도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 보고	보고				
2차	결의 사항	제18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1.02.26	2021.02.25	5/6
	결의 사항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보고 사항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보고				
3차	결의 사항	대표이사 중임의 건	가결	정기	2021.03.29	2021.03.26	5/5
	결의 사항	이사의 직위 및 업무분장 결정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이사보수 책정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임원퇴직금 산정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상담역 선임 및 보수 책정의 건	가결				
4차	보고 사항	제19기 1분기 결산 실적 보고	보고	정기	2021.05.17	2021.05.14	5/5
5차	결의 사항	이사 보수 조정의 건	가결	임시	2021.06.14	2021.06.11	5/5
	보고 사항	202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보고				
6차	보고 사항	제19기 반기 결산 실적 보고	보고	정기	2021.08.18	2021.08.17	5/5
7차	결의 사항	전자투표 시행의 건	가결	정기	2021.11.15	2021.11.12	5/5
	보고 사항	제19기 3분기 결산 실적 보고	보고				
8차	결의 사항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1.12.22	2021.12.21	5/5
	결의 사항	2021년 특별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1차	결의 사항	제1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2.02.14	2022.02.11	5/5
	결의 사항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보고 사항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보고 사항	2021년도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 보고	보고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자	안건 통지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2차	결의 사항	제19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2.02.24	2022.02.23	5/5
	결의 사항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보고 사항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보고				
3차	결의 사항	이사의 직위 및 업무분장 결정의 건	가결	정기	2022.03.30	2022.03.29	5/5
	결의 사항	이사보수 책정의 건	가결				
4차	보고 사항	2022년 1분기 결산실적 보고	보고	정기	2022.05.16	2022.05.13	5/5
	보고 사항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보고	보고				

나. 이사회회의 정기적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운영규정 마련 여부

위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작성·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정관 제40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지원실장 책임 하에 사내 보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기보고서를 통해 분기별로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공시하여 이사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기에 녹취록 관련 작성 및 보존 계획은 현재 없으나, 향후 도입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재직했던(재직중인)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년도동안 재직한 개별이사의 최근 3개 사업년도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는지 여부

이사회 결의는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규정 제9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찬성/반대)을 분기별로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기에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보다 상세한 의사록 작성을 위해 개별 이사별로 그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 ~ 2022.5.31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비고
	개최일자	'21.02.08	'21.02.26	'21.03.29	'21.05.17	'21.06.14	'21.08.18	
사내	신춘호	불참	불참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1)
	신동원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신동윤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신현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사외	김문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
	정희원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이석현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3)
구분	회차	7차	8차	1차	2차	3차	4차	비고
	개최일자	'21.11.15	'21.12.22	'22.02.14	'22.02.24	'22.03.30	'22.05.16	
사내	신춘호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1)
	신동원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신동윤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신현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사외	김문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2)
	정희원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이석현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3)

- 1) 신춘호 사내이사는 2021년 1차 및 2차 이사회에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였으며, 2021년 3월 27일 부로 사임 하였습니다.
- 2) 김문희 사외이사는 2022년 3월 30일 부로 임기만료 되었습니다.
- 3) 이석현 사외이사는 2022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 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¹⁾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2020	2019		2021	2020	2019
신춘호	사내	2003.07.01 ~2021.03.27	66.7%	0% ²⁾	100%	100%	66.7%	0%	100%	100%
신동원	사내	2003.07.01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신동윤	사내	2009.03.27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신동익	사내	2009.03.27 ~2020.03.30	100%	-	100% ³⁾	100%	100%	-	100%	100%
신현주	사내	2020.03.27 ~현재	100%	100%	100%	-	100%	100%	100%	-
김문희	사외	2010.03.26 ~2022.03.3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정희원	사외	2018.03.23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석현	사외	2022.03.30 ~현재	-	-	-	-	-	-	-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2) 신춘호 사내이사는 2021년 1차 및 2차 이사회에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였으며, 2021년 3월 27일 부로 사임 하였습니다.

3) 신동익 사내이사는 2020년 3월 30일 부로 사임하였습니다.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이사회추천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주요 역할, 구성 현황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및 제542조의11에 의거하여 이사회 산하 위원회 설치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주회사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의 제고를 위해 소규모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의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다 판단하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조직의 성장과 함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는지 여부

당사의 이사진은 이사회를 주축으로 경영 전반의 중요사항에 대해 폭넓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 권익 향상 및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따른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향후 조직의 성장, 주주 권익 향상 및 지배구조 개선 등 이사회 내 위원회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겠습니다.

4. 감사기구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 현황

(i) 내부감사기구 구성·선임 현황, 회계·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현황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으며, 상법 제409조와 정관 제43조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선임합니다.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합니다.

[내부감사기구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감사	상근감사	조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GS강남방송 대표이사 (2006년 ~ 2007년) • (주)GS홈쇼핑 부사장 (2008년)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1977년 졸업) 	2021.03.29. 퇴임
감사	상근감사	홍영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LG화학 상무·전무 (2008년 ~ 2016년) • LG디스플레이(주) 전무 (2016년 ~ 2020년)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1986년 졸업) 	2021.03.29. 선임

※ 조한용 및 홍영규 상근감사는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재무 전문가입니다.

(ii)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당사의 감사는 회계 및 업무감사,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 등의 권한을 주는 방법으로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감사는 책임관련 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이사회 및 주요 경영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규정에

의한 자료요구 및 주요 업무의 보고를 받는 등, 정기 또는 수시로 회사의 회계업무와 이사의 직무집행을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될 시, 발행주식총수 3/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으로 선임 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당사의 이사회는 감사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감사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하고, 체납사실이나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또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감사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을 정해놓은 감사규정을 통해 감사의 운영 목표, 권한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의 역할 및 직무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시, 상법 제412조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그 정보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당사의 감사는 이사회 및 주요 경영회의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을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시에 필요한 문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통제 및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별도의 감사 지원조직은 없으나, 기획부서에서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기획	1명	대리 (7년 9개월)	감사 직무수행 지원

또한, 당사는 감사에게 경영, 리더십, 인문학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주요 교육내용
2021.01.18	상장회사감사회	국내외 이슈에 따른 국내기업의 사업환경변화
2021.02.15	상장회사감사회	2021년 주주총회 주요 점검사항
2021.05.24	상장회사감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2021.07.22	삼정KPMG	감사위원회 활동사례 강연
2021.10.25	상장회사감사회	2021년 기말감사 주요 점검사항

다. 감사의 법적 책임 · 충실한 직무수행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당사의 감사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한도로 감사 본인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특성상 자회사의 업무영역을 포함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해야하므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적 역량과 전문적 지식, 그리고 업무에 대한 포괄적 관리역량이 필요합니다. 이에 당사는 감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부족함 없이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및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유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에 의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경영 효율성, 주주가치제고 등을 전방위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당사의 감사는 상법, 정관 및 규정에 의해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주요 경영회의에 모두 참석하고 있으며, 회계 및 업무감사에 더해 사내주요 현안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을 확인했으며, 해당 후보자는 경영진단(컨설팅)을 수행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주요 자회사들의 내부감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충분히 보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에도 위와 같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

당사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 실사 · 입회 · 조회, 그

밖에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등에서의 감사의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1.1 ~ 2022.5.31 감사의 주요 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상근감사 성명	
			조한용	홍영규
			출석여부	
1	2021.01.29	-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석 및 외부감사인 선정	출석	해당 없음
2	2021.02.08	1. 제1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보고사항]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2020년도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 보고	출석	
3	2021.02.26	1. 제18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보고사항]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출석	
4	2021.03.05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5	2021.03.29	1. 대표이사 중임의 건 2. 이사의 직위 및 업무분장 결정의 건 3. 이사보수 책정의 건 4. 임원퇴직금 산정의 건 5. 상담역 선임 및 보수 책정의 건	해당 없음	출석
6	2021.05.17	[보고사항] - 제19기 1분기 결산 실적 보고		출석
7	2021.06.14	1. 이사 보수 조정의 건 [보고사항] - 202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출석
8	2021.08.18	[보고사항] - 제19기 반기 결산 실적 보고		출석
9	2021.11.15	1. 전자투표 시행의 건 [보고사항] - 제19기 3분기 결산 실적보고		출석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상근감사 성명	
			조한용	홍영규
			출석여부	
10	2021.12.22	1.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2. 2021년 특별성과급 지급의 건	해당 없음	출석
1	2022.02.14	1. 제1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보고사항]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21년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 보고		
2	2022.02.24	1. 제19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보고사항] -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3	2022.03.08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 감사의 감사보고서		
4	2022.03.30	1. 이사의 직위 및 업무분장 결정의 건 2. 이사보수 책정의 건		
5	2022.05.16	[보고사항] - 2022년 1분기 결산실적 보고 -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보고		출석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된 외부감사인을 감사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개최된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된 삼정회계법인을 감사가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회사가 선임 및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1.1 ~ 2022.5.31 감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개최일자	'21.02.08	'21.02.26	'21.03.29	'21.05.17	'21.06.14	'21.08.18
감사	조한용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홍영규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구분	회차	7차	8차	1차	2차	3차	4차
	개최일자	'21.11.15	'21.12.22	'22.02.14	'22.02.24	'22.03.30	'22.05.16
감사	조한용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홍영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최근 3개 사업년도 감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찬성률]

성명	구분	상근감사 재직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¹⁾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2020	2019		2021	2020	2019
조한용	감사	2009.03.27 ~2021.03.29	100%	100% ²⁾	100%	100%	100%	100%	100%	100%
홍영규	감사	2021.03.29 ~현재	100%	100%	-	-	100%	100%	-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감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2) 조한용 감사는 2021년 3월 29일 임기만료 되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의 감사는 2021년에 개최된 모든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참석 없는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8회 진행함으로써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 그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의 감사는 회사의 회계업무 및 중요한 경영사항에 있어서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정책

(i)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기준 · 절차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ii)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 현황

당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2021년 1월에 개최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성명 / 회사명	참석여부
사외이사(위원장)	정희원	참석
사외이사	김문희	불참
감사	조한용	참석
기관투자자	신영자산운용	참석
채권자	우리카드	참석
주주	국민연금	불참
총 위원	6명	4명 참석

*총 재적인원(6명)의 3분의 2(4명) 이상 참석으로 개의

(iii)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 개최 횟수 및 각 회의에서의 논의사항

당사는 2021년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명시된 외부감사인 후보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감사업무수행팀의 역량,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수행절차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 제안서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2021년) 현재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삼정회계법인이며, 2021년 1월 개최된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2년부터 회계감사인을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iv)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합의한 감사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의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 담당 이사의 회의를 통해 해당 이사의 참여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v)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은 없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마련 및 운영 여부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명문화된 외부감사인후보 평가기준에 따라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평가를 통해 해당 외부감사인의 업무수행정도를 판단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당사의 내부감사와 회계감사인 간의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1.03.11	회사: 내부감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서면회의	- 2020년 기말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수행결과 등 - 핵심감사사항, 기타 입증감사 수행결과 등 - 기타 감사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2	2021.04.29	회사: 내부감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대면회의	- 2021년 회계감사 수행계획 및 내부회계관리 제도 감사업무 등 주요일정 논의
3	2021.05.11	회사: 내부감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대면회의	- 2021년 1분기 검토 업무수행 결과 - 2021년 연간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업무계획 및 진행현황 등
4	2021.08.13	회사: 내부감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서면회의	- 2021년 반기 검토 업무수행 결과 - 2021년 연간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업무 주요일정 및 진행상황 논의
5	2021.09.30	회사: 내부감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대면회의	- 지정 감사제도에 대한 설명 및 논의 - 감사업무 등 향후 일정 논의
6	2021.10.06	회사: 내부감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서면회의	- 핵심감사사항, 기타 입증감사 수행결과 논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2021년 향후 감사 수행계획
7	2021.11.10	회사: 내부감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서면회의	- 2021년 3분기 검토 업무수행 결과 - 2021년 연간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및 계획 등
8	2021.12.10	회사: 내부감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대면회의	- 중간감사 결과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절차 진행상황 보고 등 - 2021년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수 행 진행상황 보고

당사의 감사는 매 분기 회계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에 발견한 이슈 사항에 대해 회사의 경영진 참여 없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러한 내용을 내부감사 시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는 감사의 감독 아래 이슈 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8회의 회의 (대면회의 4회, 서면회의 4회) 가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각 분기 1회의 대면회의는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분기별 1회의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당사의 사업연도 2021년에 해당하는 주주총회일은 2022년 3월 30일이며, 감사전재무제표 전달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일자	제출내용	제출처	제출여부	비고
2022.02.14	(외부감사전) 재무제표	증권선물위원회 삼정회계법인	제출	주주총회 6주 전
2022.02.28	(외부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증권선물위원회 삼정회계법인	제출	주주총회 4주 전

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주기적 의사소통이 부족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당사의 내부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연 8회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4회의 대면회의와 4회의 서면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분기별 1회 대면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진행하지 못한 만큼 서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빈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진행될 외부감사인과의 소통은 분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 기타 주요 사항 (필요시)

- ①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적 제재를 부과 받거나 소송이 진행된 바 없습니다.
- ② 당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규정을 준수하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③ 당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시기에 있어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습니다.
- ④ 당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 내용과 이사회 출석률 · 약력 · 겸직 · 보수 · 주식 보유 현황 등 일반 지배구조 현황 내용을 적절한 방식으로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분기별로 변경사항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이사회규정
- 첨부3. 공시정보관리규정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필수 기재)

※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지표 15개를 선정, 준수 여부를 공개합니다.
 ※ 당사는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직전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는 공시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핵심 지표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상세 설명	(직전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비고
		○	X		○	X	
주 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당사는 주주총회 15일 전인 2022.3.15에 소집공고 하였습니다.	-	-	-
	② 전자투표 실시*	○		2021.11.15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2.3.30 제1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X	자회사와의 연결결산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	-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2021년에는 미흡하였으나, 2022년 3월 22일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시된 제19기 사업보고서부터 "III-6. 배당에 관한 사항"에 배당정책을 공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하고 있습니다.	-	-	-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X	이사회 규정 및 정관상 유고시 직무대행 규정 외에 따로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은 없습니다.	-	-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	-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X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신동윤 사내이사이며, 사외이사가 아닙니다.	-	-	-
	⑧ 집중투표제 채택		X	당사 정관 제31조에 의거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구분	핵심 지표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상세 설명	(직전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비고
		○	X		○	X	
이사회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의 침해, 횡령, 배임 등이 있는 자를 이사회 후보추천, 미등기임원 선임 과정에서 사규 및 내부 선임절차에 따라 배제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의 임원 중 해당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	-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2021년 한 해 동안 상장회사감사회 및 삼정 KPMG에서 주최하는 강연참여가 5회 있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그 외에도 경영, 리더십, 인문학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X	경영진으로부터 내부감사 업무 지원 조직 구성원의 지위 보장을 위해 인사평가 및 인사이동 등에 감사의 동의 등을 요구하는 명문화 된 규정이 없습니다.	-	-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상근감사는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재무 전문가입니다.	-	-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X	당사는 2021년 한해동안 분기별 평균 2회(대면회의 1회, 서면회의 1회)의 경영진 참석없이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총 회의 개최수는 8회(대면회의 4회, 서면회의 4회)였습니다. 다만, 2021년 1분기에는 COVID-19 및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일정문제로 서면회의 밖에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	-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당사 감사규정에 따라 상근감사가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	-

※ 작성 기준시점 : 보고서 제출일 현재 (2022.5.31)

- * 항목 :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 (2022.3.30)

- ** 항목 : 공시대상 기간 내(2021.1.1 ~ 2021.12.31)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